

## 6월 5일자 한겨레“전경련,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 ‘헌법119조 2항’삭제 주장”보도관련 한경연 참고자료

동 기사는 6월 4일 한국경제연구원 정책토론회‘경제민주화,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발표자인 신석훈 선임연구원이‘해석상 많은 혼란을 주고 있는 헌법 119조2항을 삭제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교수들의 견해를 인용한 것을 마치 발표자, 더 나아가 전경련이 119조2항 삭제를 주장했다고 보도하며 정치권과 재계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일부 언론들과 정치인들 역시 한겨레 신문의 이러한 보도내용을 사실 확인 조차하지 않고 받아들여 별도의 논평을 내는 등 왜곡을 확산시키고 있다. 발표문의 핵심은 경제민주화 조항을 삭제하자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밝힌다. 동 발제문은 경제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 경제민주화 조항에 근거한 국가개입을 역설하는 정치권에 대해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한 법치주의원칙도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당연한 사실을 인식시켜 주고자 한 것이다. 이를 두고 경제민주화 조항 삭제를 주장했다고 사실을 오도하는 한겨레 신문은 물론, 경제민주화 부정이라고 비판하는 일부 정치인들은 헌법을 핑계로 또 다른 헌법 원리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 2012년 6월 5일 한겨레 신문“전경련,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헌법119조2항 삭제 주장”보도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음.
  - 한겨레 신문은 6월 4일 한국경제연구원 정책토론회 ‘경제민주화, 어떻게 볼 것인가:2012 대한민국에의 시사점’에서 신석훈 선임연구원(한경연)이 “(경제민주화 근거조항인) 헌법 119조 2항은 해석상 혼란만 가중시키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하였음.
  - 일부 온라인 매체들도 이러한 한겨레 신문의 왜곡된 보도를 그대로 답습하며 왜곡된 내용의 확산에 일조하고 있음.
  - 또한 정치권에서도 왜곡된 한겨레 보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며 재계가 시대착오적인 구태의연함을 여전히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음.
    - 이현재 의원(새누리당)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민주화 조항 삭제까지 주장하는 재계는 서민경제를 부정하는 편협한 생각이라고 비판하며 재벌개혁 역풍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음.

- 민주통합당은 논평을 통해 재계도 헌법에 보장된 우리사회의 기본적 작동원리를 부정하는 수구회귀적인 움직임을 중단하라고 경고하고 있음.

□ 그러나 해당 기사는 발표문 내에서 경제민주화 조항을 삭제하고 대안을 모색하자는 일부 교수들의 견해와 연구문헌을 인용한 것을 마치 발표자의 견해처럼 교묘하게 보도한 것임. 또한 재계가 경제민주화 조항의 삭제를 주장하고 있다는 내용의 삽화를 추가함으로써 일반 대중들로부터 반기업 정서를 유도하려고 하는 의도마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이러한 여론 형성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건전한 담론 형성을 하고자 한 정책토론회의 목적마저 훼손하는 바 우려 하지 않을 수 없음.

-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헌법 119조 2항이 해석상 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해석상 혼란이 적은 헌법 37조 2항(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에 근거해 시장에 국가가 개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교수들의 견해를 발표문에서 소개하였음.

- 이러한 견해에서는 경제민주화 조항을 근거로 시장에 국가가 개입할 경우 자칫 국가권력의 남용이 우려되므로 대안으로 헌법 37조2항에 근거하여 경제활동의 규제와 조정에만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 이럴 경우 37조 2항에 포함되어 있는 과잉금지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의 제한을 받게 되므로 국가권력의 남용을 자연스럽게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임.
- 이러한 견해들은 경제민주화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민주화의 개념적 모호성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국가권력의 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제시라고 이해할 수 있음.

□ 전체 발표문을 객관적으로 읽었다면, 발표문의 핵심 주장이 헌법 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을 삭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의 전체구조 속에서 헌법 119조 2항을 유기적으로 해석해서 경제민주화 조항에 근거한 국가개입의 남용을 최소화하자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음.

- 연구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발표문의 서론과 결론 부분만을 잠시 살펴보더라도 경제민주화 조항을 삭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개념의 모호성과 추상성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국가권력의 남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해석론을 모색하자는 것임.

- 그런데도 일부 언론매체나 정치인들은 이러한 간단한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한겨레신문의 의도적으로 보이는 보도를 그대로 인용하며 ‘경제민주화 조항 삭제’라는 자극적 결론만 취해 재계가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 여론 물이를 형성하고 있음.

□ 발표자의 주장은 경제력 남용을 막기 위해 헌법상 경제민주화 조항이 필요하다며 이에 근거해 기업활동 규제에 급급한 정치권의 권한남용 역시 헌법상 법치주의 원칙에 근거해 막을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이를 ‘경제민주화 조항 삭제 또는 부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을 핑계로 한 또 다른 헌법 원리를 부정하는 것임.

- 헌법상 법치국가 원칙은 국가권력의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원칙으로 과잉금지원칙과 비례의 원칙, 적법절차 원칙 등을 핵심으로 하는 헌법 원리임.

-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그 목적이 헌법과 법률의 체계 내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함(목적의 정당성).
- 그 수단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방법으로 효과적이고 적절해야 함(수단의 적합성).
-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한 것일지라도 보다 완화된 수단이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그 제한을 필요최소한의 것이 되게 해야 함(피해의 최소화).
- 이 모든 원칙들에 적합하더라도 규제로 인해 초래되는 사적 불이익과 그 행위를 방치함으로써 초래되는 공적 불이익을 비교하여, 규제함으로써 초래되는 공익이 보다 크거나 적어도 양자 간에 균형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개연성이나 불확실한 사실에 기초해 사적 법익을 제한해서는 안 됨.

□ 경제력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는 것이 경제민주화라면 경제민주화 조항에 근거한 정치권의 우월적 지위남용을 막기 위한 것이 법치국가 원리이므로 앞으로의 경제민주화 담론에서 이러한 헌법상의 원리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 발표의 핵심임.

- 따라서 정치권과 재계 간 갈등을 의도적으로 부추기려는 왜곡된 언론보도는 향후 자제되어야 하며 ‘시장지배력 남용’과 ‘정치권력 남용’ 모두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재계와 정치권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한 시기임.